

## 沿近海水產物의 價格安定과 支持政策에 관한 小考

朱 尤 一

責任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崔 壽 喆

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 I. 序 言

- II. 沿近海漁業의 位置 및 價格動向
- III. 水產物의 需給 및 價格現象의 特異性
- IV. 水產物價格安定과 支持策

### I. 序 言

海洋分割時代에 접어든 오늘날 水產業開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국은 海洋資源開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所得은 낮고 人口는 過密한 나라들은 蛋白質不足이란 當面問題를 水產業開發을 통해 解決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水產業에 대한 依存度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水產業이 안고 있는 不確實性, 需要의 非彈力性, 小規模業體에 의한 零細經營, 爭奪, 資源量의 爭奪, 腐敗性 등은 水產物價格과 漁民所得에 심한 變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政策을 수립하여 漁民所得增大와 魚價安定을 기하여 하고 있는데, 諸方策들은 주로 歐美 선진국들에 한정되어 있고— 1930년대 이후부터서야 施行되기 시작하여 아직 初期 단계에 있다고 하

겠다.

여기서 沿近海漁業의 位置 및 價格現況, 水產物 需給와 供給 그리고 水產物 價格의 特性을 간략히 살펴본 후, 價格安定과 支持策을 실시하고 있는 外國의 諸施策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適用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水產物 價格安定帶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II. 沿近海漁業의 位置 및 價格動向

약 90만의 漁業人口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水產物生產은 1977年 현재 日本, 소련, 中共 노르웨이, 美國, 인도, 페루에 이어 세계 8위에 있고, 水產物輸出은 노르웨이, 캐나다에 이어 3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水產業은 1977년 이래 각국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로 遠洋漁場의 대부분 상실 또는 漁獲코타에 따른 入漁料支拂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 따른 諸經營費用의 上昇은 앞으로의 水產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沿近海에 관심을 한층 더 쏟고, 이에 따

에 따른 資源의 開發限界性 문제에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沿近海漁業(養殖 및 内水面 포함) 生產量 推移를 보면 量的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漁業總生產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매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77년부터 遠洋漁業의 축소로 다소 상승세를 보여 1978년 현재 179萬t으로 總漁獲量의 75.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沿近海漁業 漁船勢力은 1978년 현재 68.9千隻으로 總漁船隻數의 98.0%를 차지하고 있으나 隻當平均屯數가 5.3%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無動力船이 52.6%를 차지하고 있어 漁船의 大型화와 動力化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沿近海漁業 經營體數는 1978년 현재 39.3千個 業體로서 水產業 總業體(39.4千個 業體)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77년 각국의 200海里經濟水域宣布 이후沿近海漁業生產量이 總漁業生產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漁船隻數勢力과 經營體數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漁民의 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水產物價格政策의 중심도沿近海漁業에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水產食用品은 1967~71년에 평균 16.7%, 1972~76년에는 19.2%의 上昇率을 나타내어 평균 18.9%와 22.6%의 上昇率을 보인 農產食用品에 비해 같은 기간 중 總都賣物價는 8.9%와 19.4%—다소 안정된 價格動向을 보였다. 그러나 水產食用品의 價格은 1977년에는 前年對比 53.9%가, 1978년에는 23.1%가 上昇하였는데 비하여, 1978년 總都賣物價는 12.2%, 農產食用品은 23.1%의 下向性 上昇率을 보였다.

水產物의 種類別 價格動向을 보면, 鮮魚類는 1977년에 前年對比 54.2%의 높은 上昇率을 보였고, 1978년에는 14.6%의 비교적 安定된 上

表 1 年度別 都賣物價上昇率(前年末對比)

단위 : %

	1967~1971平均	1972~1976平均	1977	1978
總都賣物價	8.9	19.4	10.1	12.2
農產食用品	18.9	22.6	25.6	29.3
水產食用品	16.7	19.2	53.9	23.1
· 鮮魚類	—	18.9	54.2	14.6
· 乾魚類	24.5	29.3	62.3	26.6
· 海藻類	15.4	24.7	19.0	87.5

資料：水產廳,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79.

昇추세를 나타내었다. 鮮魚는 多獲性 大衆魚인 조기, 잡치, 고등어, 전갱이, 풍치, 오징어, 명태 등이 價格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資源減少 경향을 보인 조기, 오징어, 풍치를 비롯하여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로 國內搬入이 격감된 北洋명태 등이 鮮魚의 價格上昇 要因이 되고 있다.

乾魚類는 1977년에 62.3%가 치솟아 水產物都賣物價 53.9% 上昇의 주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는 26.6%의 다소 누그러진 上昇勢를 보였다. 乾魚物의 大宗品目으로는 북어, 乾오징어, 乾멸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品目은 1970年代에 들어서 生產이 문화되어 상대적으로 매년 價格이 上昇하여 水產物價格上昇을 주도하였다.

海藻類는 生產時期인 12~4月까지는 出荷增大로 대체로 안정된 價格을 형성하나 5月 이후 年末까지는 점진적인 오름세를 나타내는 特性이 있다. 海藻類는 1977년까지는 비교적 낮은 上昇率을 보이다 1978년에 87.5%라는 급등세를 나타내어 水產物 전반에 미친 영향이 커다(表1).

### III. 水產物의 需給 및 價格現象의 特異性

#### 1. 水產物의 需要와 供給

일반적으로 價格은 靜態的 經濟理論 분야에서

는 需要와 供給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나, 水產物價格은 단순히 需要, 供給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生產을 담당하는 漁民과 消費者가 多數競爭市場에서 만나 價格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需要와 供給面을 살펴봄으로써 水產物價格의 特異性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水產物需要는 人口는 물론, 社會的 慣習, 所得水準의 高低, 代替財와의 관계, 交通運輸手段의 발달정도, 貯藏施設의 보급정도, 販賣촉진 노력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需要彈力性도 그 자체가 嗜好性 食品의 性格을 띠므로一般穀物類에 비해서는 크나마 대체로 낮은 편이다. 즉 水產物은 鮮度가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消費하지 않아 價格이 떨어지더라도 需要가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供給面에서 水產業은 自然條件의 制約을 받는特性 때문에 漁獲量의 季節變動이 심하며, 天候나 漁況에 따라 나날의 豐凶差가 심하다. 또한 鮮度는 時間에 의해 좌우되므로 신속한 揭陸과 販賣가 불가피하여 供給彈力性이 낮다.

한편, 短期的으로 볼 때 沿近海漁業은 대체로孤立的 小規模經營이어서 價格이 下落하는데도 供給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魚價下落을 量으로서 補填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最低保障給이 없는 收益分配制라는 前期의 貨金制度를 채용하는 漁業經營에 있어서도 魚價가 下落하여도 供給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沿近海漁業에 있어서 雇傭勞動依存率이 높은 다수의 中小漁業이 最低保障이 없는 收益分配制를 채용하고 있는 결과, 漁業勞動者는 生產量을 增大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労賃을 增大시키는 길이므로 오히려 漁獲強度를 높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需給不均衡과 價格變動을 초래하는原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供給量은 生產手段(漁船, 漁具 등)과 勞動力 등의 投下資本을 조절하기 때문에 비교적 強力의이다.

## 2. 水產物 價格現象의 特異性

水產物은 魚類, 그 중에서도 특히 鮮魚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生產의 季節振幅이 커서 需給의 不均衡을 초래하고 市場價格을 폭등 또는 폭락시킨다. 특히 季節의으로 特定地域에 농밀한 漁場을 형성하는 多獲性 魚類는 일시에 多獲되고 揭陸地도 漁場에서 가까운 渔港에 집중되므로 豐漁窮乏現象이 일어난다. 渔村의 立地條件에 따라 流通市場이 一定範圍에 한정되어 그 좁은 범위 안에서 人口와 所得에 의해 需要量이 결정되는 價格의 局地性을 볼 수도 있다. 한편, 生產地市場과 消費地市場과의 價格에 있어서도 심한 차를 나타내는데 이는 流通構造의 多段階에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水產物의 市場價格은 短期的으로 볼 때 需要에 의해 결정되는데, 供給에 대한 價格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經營의 個別性, 前期의 貨金制度, 渔家의 家族經營 등의 諸條件은 市場價格이 需要에 더욱 의존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IV. 水產物價格安定과 支持策

### 1. 意義

水產物은 農產物과 함께 國民食生活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生產物이나,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 계층은 資本制經濟의 발전에 따른 所得隔差의 확대로 相對的으로 더욱 열세한 지위로 전락되며, 따라서 社會正義實現의 과정에서 볼 때 이 계층에 의해 生產되는 生產物의 價格을 일정수준에 유지시키기 위한 諸方策이 필요하게 된다.

더우기 水產物은 價格變動이 심하고 交易條件도 불리하여, 生產者와 消費者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需給均衡價格을 형성시켜서所得의 適正配分을 실현하도록 하는 價格支持策의 필요성이 큰 것이다.

## 2. 外國의 諸施策

先進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政府次元에서 전 혹은 產業水準에서건 水產物 價格安定과 支持策을 위해 여러 施策을 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最低價格策, 固定價格策, 契約販賣, 生產과 揭陸制限, 緩衝在庫策, 輸入制限과 같은 方法들이 있다. 이들 중 最低價格策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方策이다.

위의 諸施策을 간략히 살펴보면, 最低價格策은 水產物市場競賣에서 漁獲物의 낮은 價格으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漁民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영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벨지움,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制度는 最低價格에도 미치지 못하는 過剩 供給魚를 市場에서 수거하여 魚粉用 혹은 魚油用으로 돌림으로써 供給過剩에 의한 魚價下落과 이에 따른 漁民所得 감소를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最低價格政策은 補償金支給最低價格政策과 補償金未支給最低價格政策의 두型態를 포함하고 있다.

固定價格政策은 漁民들이 販賣機構에 의해 규

정된 一定水準의 固定價格에 漁獲物을 販賣하도록 하는 制度로 노르웨이에서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揭陸되는 모든 漁獲物은 漁民들의 販賣機構를 통해서 販賣하며, 여기서 共同으로 이미 정해진 價格으로 漁民들에게 魚價를 支拂하게 된다. 이 方法은 價格이 一定水準에 固定되어 있어 漁民所得이 不安定한 漁獲量에 따라 변동을 하므로所得安定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契約販賣는 生產者들과 生產物을 사는 사람 사이에 協定된 價格으로 買賣하는 方法으로, 量에 制限을 두지 않는 契約販賣, 量에 制限을 두는 契約販賣, 事前引渡에 基礎한 契約販賣와 總揭陸量의 一定分을 競賣하기 전에 購買者에게 販賣하는 方法을 말한다. 契約販賣制度는 미국, 아이슬랜드, 서독, 영국, 아일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다.

生產과 揭陸制限策은 漁撈航海, 漁撈期間을 制限하거나, 船員 1人當 漁獲割當量을 制限하거나, 漁業行爲를 못하게 하는 制度 및 揭陸의 一時中止와 揭陸港의 指定이 있는데, 영국, 서독,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그例를 찾을 수 있다.

緩衝在庫策은 農產物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方法으로, 政府가 物量이 많이 出荷될 때 이를 收買, 備蓄해 두었다가 生產量의 低下 때 收買備蓄物量을放出하는 方策이다. 이制度는 水產物의 경우 심한 부폐성으로 인해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나, 최근에는 저장과 가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로서 日本의 참치漁業을 들 수 있다.

輸入制限策은 水產物 價格安定과 支援策의 보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揭陸금지, 關稅부과 및 輸入量 制限 등의 型態를 취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에의 適用

西歐諸國에서 일찍부터 水產物 價格支持策이 부분적이나마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첫째, 일찍부터 漁業者 자신들이 自主的組織에 의해 自律的으로 生產을 조절 혹은 價格維持基金을 마련한다든가 하여 政府가 이를 支持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消費構造에 있어서 水產物은 단지 蛋白質供給源의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고, 또 水產業構造에 있어 經營規模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트롤漁業이 中心이 되어 있고, 揭陸地가 적고 大漁港에 集中되어 있는 등 價格政策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째, 西歐에서는 대구類나 청어類가 總水產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漁獲物의 종류가 비교적 단순하다.

네째, 先進諸國에서는 工業이 고도로 발달하여 政府財政으로 農漁民所得의 不均衡을 축소시킬 수 있는 財政力이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첫째, 水產物이 動物性蛋白質의 主要供給源이고,

둘째, 漁民 자신들의 自主的組織의 결여로 政府가 이를 支持할 수 있는 소지가 부족하다.

세째, 水產經濟構造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漁業經營規模의 격차가 크며,

네째, 漁業의 種類 및 水產物의 種類가 多種多樣하고 또한 그것이 각각 무시못할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섯째, 零細漁業이 전국 연안에 걸쳐 孤立分散的으로 행해지는 결과 그 揭陸地도 전국적으로 分散되어 있고, 價格現象의 局地性에 의해 同種의 漁獲物에 있어서도 그 價格의 地域差가

크며,

여섯째, 충분한 財政力의 뒷받침이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로 앞에서 언급한 外國의 諸施策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選別하여 우리의 特性에 맞게 실시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먼저 最低價格策은 農業에서나 漁業에서나 모두 그 실시에 制限이 있으나 最低價格을 설정하여 供給過剩에 따른 價格과 漁民所得의 극심한 下落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漁業에 적용한다면 하나의 유용한 方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過剩供給魚를 魚粉이나 魚油로 전환하는 西歐와는 달리, 늘어나는 動物性蛋白質의 需要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先進諸國과 다른 형태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또한 수송시설, 저장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실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固定價格策은, 生產者의 利益만을 위한 價格差別의 原則에 기초를 두고 있는 法定獨占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競賣制度의 전폐가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 水產業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할 것이다.

契約販賣는 生產者와 加工業者 혹은 生產者와 輸出業者 사이에 契約으로 賣買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水產加工業이 영세 소규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緩衝在庫策은 주로 마른 김, 乾鹽치, 乾오징어와 같은 저장상품에 적당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價格安定策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된 方策이다.

生產과 揭陸制限策은 우리나라의 生產增大施策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方策이 될 수 없다.

表 2 價格支持事業實績

단위: %, 百萬원

	갈 치		고 등 어		꽁 치		乾 멸 치		기 타		계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975	47	6	130	16	—	—	13	7	—	—	170	29
1976	1,142	232	1,879	204	1,497	205	20	11	1,280	389	5,818	1,042
1977	2,086	664	5,908	783	1,609	352	4	3	7,185	1,626	16,792	3,419
1978	2,799	1,235	3,455	450	2,223	524	200	214	36,136	7,136	44,813	9,559

資料：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主要業務指標」, 1979.

이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最低價格策과 緩衝在庫策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바람직 할 것 같다.

#### 4. 우리나라의 水產物 價格安定과 支持策 —水產物 價格安定帶—

우리나라에서는 일시 多獲性 大衆魚 및 그 製品의 價格진폭을 완화하고 漁業經營의 安定과 漁民所得增大에 기여하는 한편 生產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목적 아래 1975년下半期부터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農水產物安定基金, 沿近海漁業育成資金 및 一般金融資金에서 염출되는 資金을 財源으로 하여 水產物價格安定事業特別會計를 설치하고 있다. 그 實績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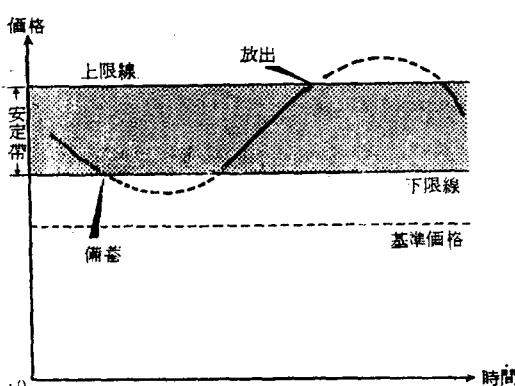
보면 1975년 갈치, 고등어, 乾멸치 3種 數量 170%, 金額으로는 29百萬원으로 시작했는데, 1976년부터 끙치를 포함한 기타魚에 대해서도 대폭 확장 실시하여 1978년 현재 갈치, 고등어, 끙치, 乾멸치, 기타 品目에 數量으로는 약 45千%, 金額으로 약 96억원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아 앞으로 더욱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表2)。

1979년 4월 農水產部에서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價格安定帶는, 價格의 上下限線을 정하여 下限線 이하로 떨어지면 收買備蓄하고 上限線을 넘으면 그 備蓄物量을放出하여, 價格의 上·下限線 범위 내에서 安定시키기 위한 施策으로 外國의 最低價格策과 緩衝在庫策을 절충한 성격을 띠고 있다(圖 1)。

消費者保護라는 측면에서 上限線을 정하고, 再生産基盤 擴大造成을 위한 生產者保護라는 점에서 下限線을 정하는데, 이를 정할 때는 ①貯藏·保管의 문제에 따른 年中平均變動幅과 ②豐凶교차에 따른 價格變動幅을 감안하여야 한다.

農水產部 설정 價格安定帶는 農水產物 18개 品目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기 갈치, 고등어, 불오징어, 生命태의 鮮魚物 5種과 乾멸치, 乾오징어, 乾명태의 乾魚物 3種, 그리고 海藻類로서 김 등 모두 9개 品目の 水產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韓國銀行 都賣物價調查編制上의 水產物 10個 品目 중 미역만

圖 1 價格安定帶



資料：許信行, “農產物價格政策보覽”, 「農村經濟」, 第2卷 1號, 1979. 3.

이 빠진 것으로 物價 자체보다는 物價指數의 安定에 역점을 둔 인상이 짙다.

價格安定帶 실시에 있어 核心事業이 되는 備蓄事業은 農水產物備蓄事業要綱(1973. 4. 24 第45次國務會議議決)에 의한 것데, 그에 의한 備蓄品目의 선정은 每年의 品目別 需給觀測과 價格展望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收買에 소요되는 資金은 農水產價格安定基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기관에 無利子로 貸下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備蓄對象品目과 收買計劃量은 價格形成의 적정振幅, 代替作物의 作況 또는 그當時의 物價 추세를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備蓄事業의 결과 발생된 缺損額은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利子收益金에서 補填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備蓄을 고려해서 설정한 農水產部의 9개 水產物價格安定帶는 제대로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市場價의 上昇에 따라 水產廳에서 下限・上限價格을 上向調整하게 되었다(中央日報 1979年 9月 7日字 참조). 農水產部에서 처음에 설정한 水產物價格安定帶에서는 常時備蓄規模에 의한 下限價備蓄所要額을 약 238억 원으로, 水產廳이 上向調整한 水產物價格安定帶에서는 1979년 收買基準計劃에 의한 下限價備蓄所要額을 약 228억

表 3 農水產部設定 水產物價格安定帶

品 目	單 位	價格安定帶		常時備蓄 規模(%)	下限價 備蓄 所要額 (百萬 원)
		下限價格 (원)	上限價格 (원)		
조 기	kg	800	1,220	3,000	2,400
갈 치	"	300	450	10,000	3,000
고 등 어	"	130	145	10,000	1,300
생 명 태	"	160	200	20,000	3,200
물오징어	"	600	840	3,000	1,800
乾 멸 치	3kg	5,200	6,750	500	866.5
김	束	2,000	3,600	500	10,000
乾오징어	貫(3.75kg)	18,300	22,600	100千束	488
乾 명 태 <sup>*</sup>	塊	2,500	2,900	600	750
水產物 合計額					23,804.5

\* 中品 1塊(20마리) 2.0kg 기준.  
資料: 農水產部(1979年 4月).

表 4 水產廳 上向調整 水產物價格安定帶

品 目	單 位	上向調整 價格安定帶		79年度 收買基準 計劃(%)	下限價備 蓄所要額 (百萬 원)
		下限價格 (원)	上限價格 (원)		
조 기	kg	910	1,380	1,192	1,085
갈 치	"	300	450	5,255	1,577
고 등 어	"	150	180	8,203	1,230
생 명 태	"	160	210	40,000	6,400
물오징어	"	680	950	706	480
乾 멸 치	3kg	5,200	6,750	450	779
김 <sup>1)</sup>	束	2,000	3,600	100 (500千束)	10,000
乾오징어	貫(3.75kg)	20,770	25,650	150	832
乾 명 태 <sup>2)</sup>	塊	2,930	3,400	300	440
水產物 合計額					22,823

1) 1束=200g 기준.

2) 中品 1塊(20마리) 2.0kg 기준.

資料: 水產廳.

表 5 價格安定帶 品目 備蓄物量 比率

品 目	1970年~77年 平均漁獲量 및 製品量(%)	農水產部 常時備蓄物量(%)	備蓄物量比率(%)
조 기	34,052	2,000	8.8
갈 치	102,559	10,000	9.6
고 등 어	77,897	10,000	12.8
생 명 태	256,979*	20,000	7.8
물오징어	36,456	3,000	8.2
乾 멸 치	9,532	500	5.2
김	5,208	100	1.9
乾오징어	5,870	100	1.7
乾 명 태	6,858	600	8.6

\* 北洋명태를 포함한 平均漁獲量임.

資料: 農水產部, 「水產統計年報」, 1979.

韓國水產技術協會, 「水產年鑑」, 1974, 1978.

원으로 잡았다(表 3, 表 4). 그런데 위의 金額들은 備蓄所要額의 最大值이며, 실제 實施에 있어서는 資金의 回轉을 고려할 때 이보다 적은 金額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에 價格安定帶品目의 1970~77년 平均漁獲量 및 製品量에 대한 常時備蓄物量比率을 보면 김 1.9%, 乾오징어 1.7%란 낮은 水準을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5~10% 水準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價格安定의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備蓄量의 增加가 要求된다(表 5).

이상에서 水產物價格安定帶 실시에 있어 제

기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品目에 있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9개 水產物品目 외에 몇 가지 魚種의 추가가 필요하다. 즉 1978年 漁獲量을 볼 때 쥐치 200千kg, 풍치 22千kg, 정어리 14千kg과 같이 多量漁獲되고 있는 魚種은 특히 魚價의 진폭이 심한데, 이들의 漁獲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漁民을 보호한다는立場에서도 이들 品目の 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備蓄 문제에 있어서 김의 備蓄所要額最大值가 단일품목으로서 100억원 가량으로 水產物備蓄所要額合計 最大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水產物價格問題가 生鮮商品에 집중되어야 하는 價格安定化 방향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農水產部 價格安定帶品目的 常時備蓄規模는 水產廳

의 1979년 價格安定帶品目 收買計劃에 나타난 規模보다는 크나 漁獲量 및 製品量에 대한 比率은 대체로 낮아 價格安定 目的 달성을 위해 上向調整이 필요하며, 備蓄事業 실시에 따른 損益 발생시 특히 缺損時의 보완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재 乾魚物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備蓄事業을 점진적으로 鮮魚物에도 적용하여 價格安定帶 설정의 意義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水產物 價格安定 및 支持策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貯藏, 保管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漁獲物 揚陸地가 전국적으로 分散되고 價格現象의 局地性을 보이므로 地域別 價格安定帶 설치도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